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받는 민간부문과 일반 직공무원에 비해 부족한 군인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확대하여 저출산 사회 극복에 동참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구호 휴가를 10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군인의 자녀가 군 입영시 동참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신설하여 병역의무이행자와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부여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1조제1호)

- 1) 기존에는 군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나. 자녀돌봄휴가 허용사유와 일수 등 확대(안 제12조제9항)

- 1) 기존에는 군인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녀입영휴가제도 도입(안 제12조제12항 신설)

- 1) 군인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에 입영하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13조제5항)

- 1)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재해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향후 추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향후 추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검찰"을 "검찰, 경찰"로 한다.

제12조제9항 본문 중 "자녀"를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연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1. 군인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의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2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인은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소집일 또는 임관식 당일 자녀 1명당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경우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경우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별표2 중 "「정신보건법」 제7조제2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하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에 대하여 제1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행일까지 사용한 재해구호휴가일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제3조(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가)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1. 국회·법원· <u>검찰</u>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가) ----- ----- ----- ----- -----. 1. 국회·법원· <u>검찰·경찰</u>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2.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자녀가</u>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청원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자녀 또는 손자녀가</u> ----- ----- <u>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u> 1. <u>군인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u>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신 설 >

⑩ ~ ⑪ (현행과 같음)

< 신 설 >

간 3일까지의 자녀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군인은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제1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휘관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
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소집일 또는 임관식 당일
자녀 1명당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승선근무예
비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
집되는 경우

2.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따라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
생으로 선발된 경우

제13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피해[본인, 배우자, 부모(배
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
녀가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 5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
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지휘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1.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
 -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임상심리사 및 직업상담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 마.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의 자격증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	
연 락 처	(02) 748 - 5167